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6년 11월 07일

개정일 : 2017년 10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또는 창작물을, 그 내용이 출판, 학술발표, 개인교신 등의 형식으로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
- ③ 피조사자 :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⑤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⑥ 판정 :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7.10.12.]

제3조의2(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본조신설 2011.8.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별도로 구성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 등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ERICA캠퍼스의 경우 ERICA부총장, 교무처장, ERICA산학협력단장, ERICA산학협력부단장 등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5., 2013.2.8., 2015.7.24.>

② 위원장은 서울캠퍼스는 교학부총장, ERICA캠퍼스는 ERICA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서울캠퍼스는 산학협력단장, ERICA캠퍼스는 ERICA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3.2.8.>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0.11.5., 2013.2.8.>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접수)

- ①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연구진흥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0.11.5., 2014.6.13.>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3.>
- ③ 구체적인 연구위반 내용의 적시없이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적시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13.>

제10조(예비조사)

-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8.10.>
- ② 예비조사위원은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관련 증거 자료
 5. 삭제 <2011.8.10.>
- ④ 해당 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11.8.10.>

제11조(본조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10., 2017.10.12.>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시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상당한 제재조치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통지)

-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1.8.10.>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8.10.>

제14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0.>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절차적권리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2.]

제17조(출석 및 자료요구)

- ① 조사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유지 등)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 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2006.11.7.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0.1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증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조사 대상의 검증시효기간 폐지에 따라 이 규정 제정일(2006.11.7)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4.6.1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규정, 2015.7.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의 교무입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2017.10.12.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한양대학교)